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00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0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3호)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에 재난 발생 시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의미를 제고하고 재난지역에 방치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서울시 관내에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조례에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 장묘시설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에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9호 신설)
- 나. 상위법 근거를 수정하고,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생 략)</p> <p>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9.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u>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 략)</p>	<p>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u>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